

(O1-01)

품종관리를 위한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제도의 고찰

최근진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산업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품종관리를 하고 종자산업발전을 위한 품종보호, 국가목록 및 종자보증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품종의 육성자가 육성품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투자에 대한 회수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는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의무적으로 성능심사를 거쳐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표시를 부착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는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코자 하는 품종을 법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품종보호출원되어 공개된 품종이거나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이다.

신고제도의 취지를 보면, 첫째는,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지 않는 작물의 품종에 대한 법적 관리를 통해 종자의 소비자인 농민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었다더라도 출원전 1년 동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신규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초 상업화를 시작한 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유예과정 중의 상업화에 따라 타인이 동 품종을 이용하여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육성하였다는 증거가 되어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지만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종자시료를 보관함으로써 유통과정중에 동 종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대비시험 재료로 활용되어 분쟁해결의 기초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1개의 품종에 대해서는 1개의 품종명칭을 사용토록 관리함으로써 종자의 소비자인 농업인으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란 등을 방지하여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표와의 상호 선출원을 인정함으로써 상표를 품종명칭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함으로서 품종보호제도와의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주저자 : 031-467-0190, kjchoi@seed.go.kr

(O1-02)

New approach for the engineering of conditional male sterile plant in rice

Hyun Kyung Bae, Hyo Jin Lee, Keun Sang Park, Jong Tae Song, Hong Gyu Kang, Jae Keun Sohn,

Soon Ki Park

Division of Plant Bio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The pollen grain is a unique tricellular structure suitable for the delivery of the sperm cells to the ovule. All nutrients required for microspore and pollen cell growth are derived by passage through the anther locule and secretion by the tapetum lining. During later stages the tapetum degenerates but contributes to produce pigments, waxes, lipids and proteins which form the pollen coat and function in signaling between male (pollen) and female (pistil) tissues. The development of both normal pollen and tapetum is necessary for the fertilization processes in rice and would be exploited for the induction of